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별하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71
------	------

제출일자 : 2024. 2. 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4년 11월 별하 어린이집(가칭) 준공 및 금천G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예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신규 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연번	시설현황				위탁체 선정	비고
	시설명	소재지	규모	보육 정원		
1	(가칭)별하 어린이집	시흥대로149가길 22(가산동)	697㎡ (지하1~지상3층)	70 (예정)	5월	-
2	금천G밸리어린이집	두산로 70 (독산1동)	297.52㎡	49	5월	-

나. 주요 위탁내용

1) 위탁기간 : 5년

2) 위탁업무

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다)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 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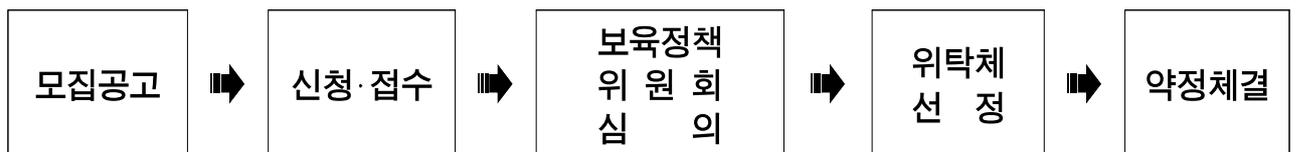
다. 위탁체 선정방법 및 절차

1)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선정

< 신규위탁 심사기준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2
- 보건복지부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 보건복지부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2) 선정절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1)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어린이집연합회 간 네트워크 운영이 강점이 됨

4.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2021.11.16>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끝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1.11.16.>

④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알리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1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개정 2016.7.18.> [전문개정 2020.7.17]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본조신설 2020.7.17]